

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소개

국가사이버안전센터

요 약

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·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.

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,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.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I. 목 적

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·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.

II. 법적 근거

- ◎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 제2항(직무)
- ◎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(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·시행) 제3항
- ◎ 「전자정부법」 시행령 제69조(전자문서의 보관·유통 관련 보안조치)
- ◎ 「전자정부법」 시행령 제70조(보안조치 이행여부의 확인)
- ◎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조(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)
- ◎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 제9조(사이버안전대책 수립·시행 등) 제4항
- ◎ 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」 제12조(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)

III. 추진 경과

- ◎ 2004년 정보보안 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
- ◎ 2006년 50개 국가기관 대상 시범평가 실시

- ◎ 2007년 교육청 포함 99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 실시
- ◎ 200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상 확대, 117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
- ◎ 2009~2010년 공기업으로 대상 확대, 145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
- ◎ 2011년 147개 기관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직접 평가하는 한편, 감독부처를 통해 부처 산하기관 간접평가를 병행하여 총 800여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
- ◎ 2012년 준정부기관으로 대상 확대, 199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
- ◎ 2013년 120개 국가·공공기관 대상 평가

IV. 평가 방법

- ◎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객관성·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.
- ◎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민·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한다.
- ◎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보안 정책, 평가분석 결과, 사이버위협 실태 등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 기준·항목 등을 수정·보완하여 평가에 적용한다.
- ◎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.

| 평가 단계 | 주체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❶ 기관별 자체평가 | 각급기관 |
| ❷ 현장실사 | 국가사이버안전센터 |
| ❸ 결과분석 및 점수산출 | 국가사이버안전센터 |
| ❹ 평가결과 심의·의결 | 평가위원회 |
| ❺ 최종 평가결과 통보 | 국가사이버안전센터 |

(그림 1)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단계

4.1. 기관별 자체평가

- 평가 대상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구축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각 평가항목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각급기관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현장실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각급기관은 평가내용 입력시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·사진 등 관련 자료를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다.
- 자체평가 기간 중 각급기관 참여하에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.

4.2. 현장실사

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각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한다
- 현장실사 평가반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學·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- 자체평가와 현장실사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점수가 변동될 경우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한다.
- 평가 대상기관은 자체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면담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- 실사반은 직원의 보안의식 확인을 위해 일반직원을 임의 선정하여 정보보안 기본수칙·사이버침해사고 대응절차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PC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.
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현장실사시 대상기관이 제출한 서류·문건 등에 대해 종료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본 1부를 제출 받을 수 있다.

4.3. 결과분석 및 점수산출

-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된 현장실사 점수와 정성 평가점수를 일정 비율(매년 변동 가능)로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.
- 평가점수는 점수에 따라 우수(90이상), 양호(80이상), 보통(70이상), 미흡(60이상), 불량(60미만)의 5단계로 구분한다.
- 정성평가 점수는該 기관의 연간 해킹사고 발생현황, 사이버위기대응 통합훈련 결과, 정보보안 우수사례, 평가준비 사항(정성평가) 등을 종합하여 반영한다.
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기관별 현장실사 등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, 우수·미흡 분야를 도출한다.
- 평가결과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연도별, 평가지표별, 보안요소별, 보안활동 주체별 보안수준을 도출하고 기관의 보안활동 중점 방향을 발굴한다.

4.4. 평가결과 통보

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기관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기관과 정부업무평가 주관 기관인 기재부, 안행부 등에 통보한다.
- 평가 대상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통보한 평가결과를 자체 정보보안 대책 등에 반영, 미흡 점을 개선·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.
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평가결과 공통적으로 드러난 보안 취약요소 보완을 위해 국가 정보보안정책에 개선대책을 반영하는 한편, 차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.

〔표 1〕 평가지표 분류표

| 분 야 | 평 가 지 표 | 항 목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정보보안 정책(20) | 1.1 정보보안 규정 및 계획 | 3개 |
| | 1.2 정보보안 조직 및 인원 | 5개 |
| | 1.3 정보보안 기본활동 | 6개 |
| | 1.4 기관장 관심도 | 3개 |
| | 1.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| 3개 |
| 2. 정보자산 보안관리 (23) | 2.1 정보자산 승인 및 관리 | 4개 |
| | 2.2 용역사업 관리 | 9개 |
| | 2.3 국가용 보안시스템 | 3개 |
| | 2.4 보호구역 관리 | 4개 |
| | 2.5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| 3개 |
| 3. 인적 보안(14) | 3.1 내부인원 보안 | 2개 |
| | 3.2 외부인원 보안 | 5개 |
| | 3.3 정보보안 교육 | 7개 |
| 4. 사이버위기 관리(16) | 4.1 사이버위기 관리체계 구축 | 2개 |
| | 4.2 예방활동 | 5개 |
| | 4.3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| 5개 |
| | 4.4 사이버침해사고 대응·복구 | 4개 |
| 5. 전자정보 보안(26) | 5.1 비밀의 전자적 관리 | 4개 |
| | 5.2 전자우편 보안 | 3개 |
| | 5.3 웹서비스 보안 | 6개 |
| | 5.4 전자정보 유출 방지 | 7개 |
| | 5.5 사용자 인증 | 4개 |
| | 5.6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| 2개 |
| 6. 정보시스템 보안(30) | 6.1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| 6개 |
| | 6.2 무선랜 보안 | 3개 |
| | 6.3 네트워크 보안 | 4개 |
| | 6.4 정보시스템 운용관리 | 6개 |
| | 6.5 PC 보안 | 7개 |
| | 6.6 로그 및 백업 | 4개 |
| 합 계 | 29개 지표 | 129개 |

V. 평가결과 활용

- ◎ 국가·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에 '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' 반영
- ◎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보안평가 결과 통보, 대통령 보고
- ◎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,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
- ◎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
- ◎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